

2022회계연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고용노동부

- 순 서 -

I. '22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	1
1. 편성 방향	1
2. 총지출 규모	1
3. 주요사업 편성내용	3
II. '22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 내용	12
1. 예산	12
2. 고용보험기금	33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7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59
5. 임금채권보장기금	65
6. 근로복지진흥기금	68

I. 2022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주요내용

1. 편성 방향

◇ '22년 예산 규모는 36조 5,720억원 ('21년 본예산 대비 2.6%, 9,234억원 ↑)

* <'19> 26.7조원 → <'20> 30.5조원 → <'21> 35.6조원 → <'22> 36.6조원

- ①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등 조정·종료 ⇒ 고용회복·고용안전망 확충 집중 지원
- ②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 중심 디지털 인력양성, 이·전직자 중심 노동전환 지원 등 투자 확대
- ③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2. 총지출 규모

□ 총지출은 36조 5,720억원, '21년 본예산 대비 9,234억원(2.6%) 증가

○ 일반·특별회계는 7조 993억원으로, '21년 대비 322억원(0.5%) 증가

○ 기금은 29조 4,727억원으로, '21년 대비 8,912억원(3.1%) 증가

* (고용보험기금) 18조 8,405억원으로, △37억원 감소(0.02%)

* (산재보험기금) 8조 8,844억원으로, 7,854억원 증가(9.7%)

< '22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억원, %)

회계·기금별	'21년 예산		'22년 예산 (B)	'21년 대비 (B-A)	%
	당초(A)	추경(+)			
▪ 총지출(a+b)	356,487	25,877	365,720	9,234	2.6
- 예산지출(a)	70,672	16,016	70,993	322	0.5
· 일반회계	67,133	15,716	67,526	393	0.6
· 특별회계	3,538	300	3,467	△71	△2.0
- 기금지출(b)	285,815	9,860	294,727	8,912	3.1
· 고용보험	188,443	8,544	188,405	△37	△0.02
· 산재보험	80,990	458	88,844	7,854	9.7
· 장애인	6,789	49	7,663	873	12.9
· 임금채권	7,304	-	7,008	△296	△4.1
· 근로복지	2,288	809	2,806	518	22.7

□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24조 4,942억원으로, '21년 대비 1.6% (+3,761억원) 증가

○ 직접일자리 414억원으로 '21년 대비 689억원(△62.5%) 감소

* 주요감액: 신중년 사회공헌(△146억원 순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 변경(직접일자리→직업훈련) 등

○ 직업훈련은 2조 2,724억원으로 '21년 대비 3,012원(15.3%) 증가

* 주요증액: 내일배움카드(일반)(1,417억원 → 3,263억원, +1,835억원)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917억원 신설)

○ 고용서비스는 1조 8,817억원으로 '21년 대비 2,917억원(18.3%) 증가

* 주요증액: 국민취업지원제도(12,101억원 → 14,965억원, +2,864억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219억원 → 566억원, +346억원) 등

○ 고용장려금은 7조 5,690억원으로 '21년 대비 3,430억원(△4.3%) 감소

* 주요증액: 청년일자리창출지원(5,428억원 신설)
육아휴직급여(12,486억원 → 15,807억원, +3,321억원) 등

○ 실업소득지원은 12조 6,835억원으로 '21년 대비 1,804억원(1.4%) 증가

* 주요증액: 구직급여(113,486억원 → 115,339억원, +1,853억원) 등

<고용노동부 '22년 일자리 사업 예산>

(억원, %)

구 분	'21년 예산 (A)	'22년 예산 (B)	'21년 대비 (B-A)	%
합 계	241,181	244,942	3,761	+1.6
▪ 직접일자리	1,102	414	△689	△62.5
▪ 직업훈련	19,712	22,724	3,012	+15.3
▪ 고용서비스	15,900	18,817	2,917	+18.3
▪ 고용장려금	79,120	75,690	△3,430	△4.3
▪ 창업지원	316	462	146	+46.3
▪ 실업소득유지지원	125,031	126,835	1,804	+1.4

3. 주요사업 편성내용

1 고용회복 · 고용안정 지원

- ❖ 청년 대상 채용장려금 지원 +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지원 확대
⇒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 중심으로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 지원
- ❖ '20~'21년 동안 지출규모가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정상화

① (청년) 취업애로청년 14만명 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

* <'22> 0.5조원 / 5인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月 80만원*12개월 지원

* 한시사업(~'21년)은 잔여사업비 편성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 1.2조원 → <'22> 1조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1 현액> 0.2조원 → <'22> 0.5조원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7만명 지원, 기업자부담 조정* 등 제도개편 병행

* <'21> 1.4조원, 10만명 → <'22> 1.3조원, 7만명

* (자부담률) ▲30~49人: 0 → 20% ▲50~199人: 20 → 50% ▲200人이상: 20 → 100%

○ 민간기업과 협업,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훈련 · 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산 <'22> 170억원

○ 온라인청년센터(24→41억원), 대학일자리센터(182→325억원) 지원 확대로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 통합제공, 일자리매칭 등 강화

②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바 있으나, 고용 · 경영 개선 전망,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예산 규모 조정(1.4→0.6조원)

③ (일자리안정자금)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 <'21> 1.3조원 → <'22> 0.5조원 (6개월분 지원)

2

디지털 · 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지원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디지털 인재 수요 급증 ⇒ 혁신적인 기업 · 훈련기관과 협업하여 디지털 ·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충

* (직업능력개발분야) <'21> 2.4조원 → <'22> 2.6조원(9%↑)

❖ 고용충격이 예상되는 산업 · 업종에 대해 직무전환, 재취업, 직업훈련 등 노동전환 대응체계 구축 · 지원

① (인력양성)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민간, K-Digital Training), 폴리텍(공공), 특성화고(고졸청년) 중심으로 디지털 ·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 (K-Digital Training<디지털핵심실무인재양성훈련>): <'21> 1.7만명 → <'22> 2.9만명
(폴리텍) AI+x, 저탄소 등 10개 학과 신설
(고졸인력양성) <'21> 특성화고 8개학과 → <'22> 40개 학과 지원

○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중장년 경력설계 등 지원

*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최대 500만원) 외 디지털 기초훈련(50만원) · 경력설계 비용(100만원) 지원
<'21> 4만명, 200억원 → <'22> 6만명(디지털 5.5만명, 중장년 0.5만명), 325억원

○ 재직자 대상 디지털기초융합훈련도 확대 <'21> 52 → <'22> 188억원

② (노동전환 지원) 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사업' 신설 (기후기금)

* ▲ 노동전환 지원금: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사업전환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노사가 고용안정협약 체결 시 고용환경개선 등 비용 지원 등

○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5만명) 및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1만명) 지원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현장맞춤형 훈련 수시 발굴 · 지원

3

초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있게 확대, 일용근로자·플랫폼종사자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확충
- ❖ 「가사근로자법」(22.6월 시행) 등 제정법령 현장안착 뒷받침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지원

* ①취업지원프로그램(I·II유형 공통) : 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프로그램 연계 등

②생계지원 (I 유형) 구직촉진수당 : 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II유형)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4만원

* <'21> 1.2조원, 59만명 → <'22> 1.5조원, 60만명

②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영세사업장 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 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확대

* (현행)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시 지원 불가 →

(개편)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특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만 제한

* <'21> 0.8조원 → <'22> 1조원(▲상용: 91만명 ▲일용: 43만명 ▲예술인·특고·플랫폼: 39만명)

○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③ (구직·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증가추세,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특고 적용제외 제도개선, 5개 직종 적용 확대 등) 등 반영

* (구직급여) <'21> 164만명(일반 164 + 예술인 0.4), 11.3조원 →

<'22> 172만명(일반 163 + 예술인·특고 8.5), 11.5조원

* (산재보험급여) <'21> 59만명, 6.5조원 → <'22> 63만명, 7.1조원

④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설

* (사회보험료) 정부 인증 기관이 가사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5천명)
(컨설팅) 기존 가사서비스 기관을 정부 인증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증요건 등 컨설팅(100개소)

⑤ (플랫폼종사자 보호)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 신설

*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시 소요비용 50% 지원 (최대 3억원)

4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3+3 육아휴직제,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편성 ⇒ 사각지대 보완

① (여성) 3+3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향상(4~12개월: 50→80%),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미만)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月 최대 300만원)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가 만 1세미만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시 해당 사업주에게 첫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4~12개월: 월 30만원)

② (고령자)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6천명), 계속고용장려금 확대(2.3→3천명)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 시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

③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3천명), 근로지원인 확대(8→10천명)

*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시 月 30~80만원 12개월 지원

5 안전한 일터 조성

❖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1조원 이상 편성 (1→1.1조원), 취약사업장 시설지원 및 현장지도 강화

① (안전투자혁신)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 * <'22> 3,271억원

②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시스템비계, 끼임예방장치 등) 지원 * <'21> 943억원, 1.2만개소 → <'22> 1,197억원, 1.5만개소

③ (특수건강진단지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확대

* 유해인자(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진단비용 지원 <'21> 20인 미만 35만명, 207억원 → <'22> 30인 미만 사업장 53만명, 309억원

④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 강화

* <'21> 696억원 → <'22> 859억원 (위탁 기술지원 29만회, 안전보건지킴이 등)

참고 1

부문별 주요사업 편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A)	'22년 (B)	증감		주요내용
			(B-A)	(%)	
합 계	356,487	365,720	9,234	2.6	
■ 고용창출	54,427	50,200	△4,228	△7.8	- 고용창출장려금(0.2→0.7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3.9만명, 0.5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0.47→0.54조) - 청년내일채움공제(1.4→1.3조) -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219→566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325억, +143억) - 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170억 순증) - 고용유지지원금(1.4→0.6조)
■ 직업능력개발	24,304	26,351	2,047	8.4	- 내일배움카드(1.0→1.2조)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0.11조→0.13조)
■ 고용안전망	151,164	149,953	△1411	△0.9	- 국민취업지원제도(1.2→1.5조) - 구직급여(11.3→11.5조)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0.8→1조) - 일자리안정자금(1.3→0.5조)
■ 고용평등증진 및 장애인고용증진	26,579	30,617	4,039	15.2	- 고용안정장려금(0.15→0.19조) - 장애인고용관리지원(0.16→0.21조) - 장애인고용장려금(0.25→0.26조)
■ 노사정책 및 근로조건 보호·증진	10,150	10,601	451	4.4	- 체불청산지원용자(240→307억) - 합리적노사관계지원(170→160억) - 방문돌봄종사자한시지원(460억 순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77,937	85,567	7,631	9.8	- 산재보험급여(6.5→7.1조) - 산재병원지원(300→548억)
(산재예방)	9,770	10,922	1,151	11.8	- 클린사업장조성지원(0.42→0.45조) - 업종별재해예방(696→914억)
■ 고용노동행정지원	11,927	12,632	704	5.9	- 고객상담센터운영(65→71억) - 고용노동행정(정보화)(227→289억) - 고용노동부 인건비 등

참고 2

재정 효율화(감액) 추진 현황

□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 증액사업, 재정사업평가 결과 및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

<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억원)

사 업 명	'21년 예산 (a)	'22년 예산 (b)	증감액	
			(b-a)	%
고용센터인력지원	885	858	△28	△3.2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9,081	8,755	△326	△3.6
고용유지지원금	13,728	5,981	△7,748	△56.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018	9,952	△2,066	△17.2
고용장려금(융자)	90	55	△36	△40.0
한국잡월드운영지원	270	200	△69	△25.6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480	1,327	△153	△10.3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4,936	4,344	△592	△12.0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112	84	△28	△25.0
내일배움카드(고보)	8,005	7,983	△22	△0.3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763	2,744	△19	△0.7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3,179	2,866	△313	△9.8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740	539	△201	△27.2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434	410	△24	△5.5
실업크레딧지원(일반)	323	303	△20	△6.2
일자리안정자금지원	12,966	4,635	△8,330	△64.2
실업크레딧지원(고보)	320	300	△20	△6.3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438	291	△147	△33.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49	128	△121	△48.6
직장어린이집지원	1,271	1,260	△11	△0.9
장년고용안정지원금	536	264	△272	△50.7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170	155	△15	△8.5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6,698	6,431	△267	△4.0
무료법률구조지원	229	109	△120	△52.4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41	110	△31	△22.0
진폐위로금지급	893	881	△12	△1.3
일자리위원회운영	71	35	△36	△50.6

참고 3

주요 신규·완료사업 현황

1. 신규사업

(단위: 억원)

사 업 명	'22년 예산	비 고
합 계	21	-
■ 일반회계	21	-
•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21	◦ 사회보험료 지원 및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2. 완료사업

(단위: 억원)

사 업 명	'21년 예산	비 고
합 계	7,830	
■ 일반회계	6,183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1,200	◦ 한시사업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563	◦ 한시사업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420	◦ 한시사업
■ 고용보험기금	878	
• 고용유지자금융자(융자)	878	◦ 한시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769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769	◦ 한시사업

참고 4

주요 증액 사업

○ '21년 대비 100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된 사업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청년센터 운영	일반	43	117	74	172.1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일반	48	69	21	43.8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일반	4,676	5,428	752	16.1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일반	219	566	346	157.9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일반	-	21	21	순증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정보화)	일반	7	189	182	2,600.0
내일배움카드(일반)	일반	2,145	4,263	2,118	98.7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일반	8.4	42	33.6	400.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일반	8,103	10,466	2,363	29.2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일반	12,101	14,965	2,864	23.7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일반	19	28	9	47.4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일반	18	42	24	133.3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	일반	93	151	58	62.4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일반	7	20	13	185.7
사회적기업육성(제주)	균특	12	51	39	325.0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균특	95	130	35	36.8
고용창출장려금	고보	1,865	6,869	5,004	268.3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고보	51	239	188	368.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보	1,143	1,319	176	15.4
구직급여	고보	113,486	115,339	1,853	1.6
조기재취업수당	고보	3,474	3,656	182	5.2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보	56	89	33	59.6
고용안정장려금	고보	1,550	1,852	302	19.5
모성보호육아지원	고보	15,915	19,333	3,418	21.5
산재보험급여	산재	65,236	71,463	6,227	9.5
산재병원지원	산재	300	548	248	82.7
산재보험 시설건립	산재	23	71	48	208.7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산재	4,273	4,509	236	5.5
산재예방시설용자(용자)	산재	3,228	3,563	335	10.4
업종별재해예방	산재	696	914	218	31.4
유해작업환경개선	산재	616	793	177	28.7
산재예방시설건립	산재	112	230	118	105.4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2,522	2,624	102	4.0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	1,612	2,107	495	30.7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장애인	34	45	11	32.4
퇴직연금 사업운영	근복	28	92	64	228.6
신용보증대위변제	근복	192	283	91	47.4

참고 5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개관 및 적립금

(‘21.12월 기준)

구 분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 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설 치 목 적		실직자 생활안정, 고용촉진	업무상재해보상	임금채불노동자 생활안정	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설 치 근 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 초 시 행		1995년	1964년	1998년	1994년	1991년
운영 기관	징수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급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적용사업장		1인 이상 (252만 개소)	272만 개소	좌동	-	부담금: 100인 이상 장려금: 장애인 2명 고용 이상
보험가입자 (부담자)		피보험자 (1,463만명) 사업장 (252만 개소)	사업주	좌동	-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 (민간 31%, 공공 34%)
피보험자 (수혜자)		노동자(1,463만명)	노동자 (1,897만명)	좌동	저소득 근로자 등	사업주, 장애인
보 험 료		보수총액 × 보험료율	좌동	좌동	복권 수익금 분배 비율	부담기초액(고시) × 가산율 × 고용미달인원
보험 료율	산출 방법	30/1000 내에서 정함	보험급여 지급률 (3년 보험급여 지출액 / 3년 보수총액) + 추가지출률 + 부가보험료율	2/1,000 내에서 정함	복권수익금 × 1.86%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의 60% 이상
	계정별 요율	실업급여계정 1.6%(노사 각 50%) <예술인·특고 1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평균 1.53% (0.70% ~ 18.60%)	0.06%	복권수익금 × 1.86%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에 고용률별로 가산 <단 미고용시 최저 임금 부담>
’21.사업비		222,723억원	81,580억원	7,304억원	3,448억원	6,789억원
’20.연말적립금		66,996억원	207,196억원	8,340억원	1,273억원	9,679억원
’20.적립금비율		실업급여계정 0.3 고안·직능계정 0.4	3.5	1.8	0.4	1.4
법정적립금비율		실업급여 1.5~2배 고용안정·직능 1~1.5배	1.0	1.0	-	-

Ⅱ. 2022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용

- ◇ 총지출 36조 5,720억원('21년 대비 +9,234억원, +2.6%)
- 예산안은 7조 993억원('21년 대비 +322억원, +0.5%)
 - 기금운용계획안은 29조 4,727억원('21년 대비 +8,912억원, +3.1%)

1. 예산

1) 세입 및 세출 총괄

□ 세 입

- 수입은 1,314억원으로 '21년 대비 451억원(52.2%) 증액

(단위: 백만원)

내역별	'21예산 (A)	'22예산 (B)	증감(B-A)	%
합 계	86,322	141,061	54,739	63.4
○ 일반회계	85,961	131,061	45,100	52.5
· 기타재산 수입	776	776	-	-
· 과태료 수입	42,900	42,900	-	-
· 위약금 및 가산금	10	10	-	-
· 기타경상이전수입	41,900	87,000	45,100	107.6
· 기타 수입	13	13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1	-	△361	순감
· 기타경상이전수입	361	-	△361	순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0,000	10,000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	10,000	10,000	순증

□ 세 출

- 지출은 7조 993억원으로 '21년 대비 322억원(0.5%) 증액

(단위: 백만원)

회계별	'21예산 (A)	'22예산 (B)	증감(B-A)	%
합 계	7,067,169	7,099,325	32,156	0.5
○ 일반회계	6,713,346	6,752,598	39,252	0.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2,211	90,955	△1,256	△1.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61,612	255,772	△5,840	△2.2

2) 주요 사업별 예산

① 노동시장정책 사업

-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
-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예상되는 고용효과 분석
- ❖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635억원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동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7억원

- 고용정책심의회 운영, 자치단체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주요 일자리정책 추진 지원

○ 고용영향평가사업: 42억원

-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 실시, 재정사업과 예산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고용영향 평가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327억원

- 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설계·제안하고, 고용부가 공모로 선정·지원
- 아울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추진, 자치단체가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691억원)

* 일반 지산맞(기초, 225억) 지방이양으로 인해 '22년 예산 삭감

< '22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1,449,442	601,091	△ 848,351	△ 58.5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1,296,564	463,538	△ 833,026	△ 64.2
○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692	692	-	-
○ 고용영향평가사업	4,157	4,157	-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48,029	132,704	△ 15,325	△ 10.4

2 고용서비스 사업

- ❖ 일자리 정책의 성과도출을 위한 공공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 실직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1조 4,965억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I 유형), 취업성공패키지지원(I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이 2022년부터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1조 2,056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저소득 구직자 등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 * 지원규모: ('21년) 40만명 → ('22년) 50만명(+10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1,739억원)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
 - * 지원규모: ('21년) 19만명 → ('22년) 10만명(△9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1,162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 체험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실비수당(1일 2.2만원) 지급,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담당자 멘토링비(10만원) 지급, ('21) 2.3만명 → ('22) 0.75만명
 - * 인턴형: 참여자에게 참여자수당(월 191만원×3개월,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담당자 멘토링비(월 10만원) 지급, ('21) 0.6만명 → ('22) 1.75만명
- (연계·협업 지원: 7.5억원) 상담 역량 개발을 통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유관기관 상담사 교육과정 강화

○ 취약계층취업촉진: 118억원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취업촉진 도모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466억원

- 10인 미만 사업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및 예술인·특고 고용보험료 계속 지원, 플랫폼(퀵·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 지원대상: ('21년)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22년) 230만원 미만

○ 실업크레딧지원: 303억원

- 일정 소득* 이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 재산 6억원, 소득 1,680만원 이하

** 일반회계 25%, 고보기금 25%(고용부), 국민연금기금 25%(복지부), 자부담 25%

○ 고용센터인력지원: 857억원

- 고용센터에서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 직업상담원 200명 등 전문인력 운영 지원
-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 직업안정기관운영: 438억원

- 취업지원,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 지원

< '22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2,196,868	2,714,772	517,904	23.6
○ 국민취업지원제도*	1,210,059	1,496,473	286,414	23.7
○ 취약계층취업촉진	11,654	11,849	195	1.7
○ 직업안정기관운영	36,590	43,795	7,205	19.7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10,347	1,046,594	236,247	29.2
○ 실업크레딧지원(일반)	32,292	30,306	△1,972	△6.2
○ 고용센터인력지원	95,926	85,755	△10,171	△10.6

* '22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1234-300), 취업성공패키지지원(1234-30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1234-303)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 '21예산은 세부사업 합계액 기준

③ 고용지원 사업

-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고용24 구축 등을 통한 온라인 고용서비스 지원
- ❖ 노동시장 현황 및 고용노동현안 이슈의 신속한 파악을 통한 고용 정책 수립 지원
-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지원

○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84억원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매칭시스템을 구축, 전 생애에 걸쳐 상황별·고용형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기반 AIG용서비스지원(58억원), ▲데이터사전 구축을 위한 온톨로지센터 운영(21억원), ▲머신러닝 기반의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5억원)

○ 디지털기반의 고용서비스인프라 지원: 189억원

- ‘고용24’(지원금 관리 및 추천시스템) 및 고용행정통합포털 구축 등을 통한 온라인 고용서비스로의 전환 지원
 - * ▲고용24 구축(165억원), ▲고용행정통합포털 구축(17억원), ▲일반운영비(7억원)

○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413억원

- 한국고용정보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507명, 366억원) 및 기관운영비(47억원)를 지원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69억원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를 구축, 국가기반시설 및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공사비 65억, 감리비·시설부대비 4억원)
 - * 국가기반시설 : 고용보험전산망
 - 정보통신기반시설 : 고용보험전산망, 고용안정전산망,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

○ 고용노동통계조사: 242억원

-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6종(부가조사 포함 8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각종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연 2회 실시) 범위 확대로 통계 사각지대 해소

* 사업체의 구인·채용·미충원·부족인원, 외국인력 도입·인력수급·훈련수요 등에 활용

** (현행)상용 5인 이상⇒ (확대)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32천개→ 72천개, +40천개)

- 조사확대('20년 2종)에 따른 조사인력 사무공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단계적·연차적(3년차) 통계 인프라 확충

○ 고용동향조사분석: 68억원

- 대상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등 고용패널 자료 생산, 고용동향 심층 분석 및 인력수급 전망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50억원)
- 빅데이터 수집 생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구축(14억원), 초고령 사회 대비 고용통계 및 해외사례 분석을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연구(4억원)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21억원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및 컨설팅 지원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7억원), ▲컨설팅 등 제도운영(3억원), ▲전산시스템(ISP) 운영(1억원)

< '22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80,504	108,613	28,109	34.9
○ 고용노동통계조사	24,422	24,177	△245	△1.0
○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32,819	41,282	8,463	25.8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4,797	6,862	2,065	43.0
○ 고용동향조사분석	6,632	6,822	190	2.9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0	2,097	2,097	순증
○ 일자리 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11,184	8,431	△2,753	△24.6
○ 디지털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지원(정보화)	650	18,942	18,292	2,814.2

4 청년고용 사업

- ❖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
- ❖ 청년들의 체계적인 취업진로 및 일경험을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적극지원

○ 청년센터 운영: 117억원

- 청년 친화적인 청년정책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청년일자리사업 등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운영 지원
 - * 온라인 ('21년) 24억원 → ('22년) 41억원 (청년정책 오픈 API 연계 서비스 구축,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비 등)
 - * 오프라인 ('21년) 지자체 청년센터 12개소 19억원→ ('22년) 0원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청년센터 0원→ ('22년) 28개소, 76억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428억원

- 미래유망기업 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최대 960만원)
 - * ('22년 신설) 14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8,755억원

-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신규 7만명)
 - *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 ('21) 35.2만명(신규 10만+지속 25.2만) → ('22년) 36.7만명(신규 7만+지속 29.7만)

○ 한국잡월드운영: 200억원

- 한국잡월드 운영을 위한 출연금(총지출 299억원-자체수입 99억원)
 - * (사업비) 227억원(전시체험콘텐츠 9억, 전시체험관 177억, 숙련기술체험관 30억, 정보화시스템 6억, 기타 5억), 기타 운영 30억 등

○ 해외취업지원: 551억원

- 해외 진출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 K-Move 스쿨: ('21년) 3,032명 → ('22년) 3,200명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21년) 690명 → ('22년) 690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21년) 3,960명 → ('22년) 4,100명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566억원

-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및 높은 수준의 훈련·일경험 확대, 채용문화 개선 등 학교-노동시장 간 원활한 연계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0개소,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1만명 지원,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등

○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38억원

- 직업심리검사, 진로상담 매뉴얼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진로지도전문가 양성교육, 청년고용정책 총괄 연구개발 및 모니터링을 위한 허브기능 구축 등을 통해 청년 및 성인의 진로 설계 및 취업지원

* 직업정보제공 12.8억원, 직업지도 25.3억원

< '22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1,518,841	1,565,514	46,673	3.1
○ 청년센터 운영	4,273	11,728	7,455	174.5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¹⁾	467,600	542,800	75,200	16.1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908,102	875,468	△32,634	△3.6
○ 한국잡월드운영	26,962	20,042	△6,920	△25.7
○ 해외취업지원	52,625	55,074	2,449	4.7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1,931	56,571	34,640	157.9
○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3,811	3,811	-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3,537	0	△33,537	순감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세부사업 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21년 예산)은 '21년 종료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22년예산)이 신설

⑤ 여성·장년 및 사회적기업 사업

-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등 남녀 근로자의 육아 부담 경감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신중년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 활용을 통한 신중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 사회적기업 창업팀 지원, 성장지원, 재정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8억원

-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운영,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지원 등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사업 운영 등 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총 지원인원 8,484명)

- 임신·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291억원(총 지원인원 5,000명)

- 퇴직 이후 신중년이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지방이양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유지(5,000명)

○ 중장년층취업지원: 213억원

-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근로자에게 생애설계교육, 전직지원,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4만명,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450개소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일반회계>: 217억원

-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분야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지원
- * 총 1,249개소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644억원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성장지원센터 운영, 판로·성장지원 등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업팀(850팀→900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13→15개소)

○ 사회적기업 육성<균특회계>: 993억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일자리창출 7,470명, 사회보험료 6,252명

○ 사회적기업 육성(제주)<균특회계>: 51억원

- 제주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사업개발비 28개소, 사업운영비 63백만원, 일자리창출 308명, 사회보험료 130명

< '22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273,686	256,611	-17,075	-6.2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929	2,846	917	47.5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4,899	12,776	△12,123	48.7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43,826	29,131	△14,695	33.5
○ 중장년층 취업지원	22,252	21,306	△946	4.3
○ 사회적기업 육성<일반회계>	22,245	21,745	△500	2.2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59,924	64,402	4,478	7.5
○ 사회적기업 육성<균특회계>	97,405	99,272	1,867	1.9
○ 사회적기업 육성(제주)	1,206	5,133	3,927	325.6

⑥ 직업능력개발 사업

- ❖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사람투자 확대
- ❖ STEP 고도화 등 비대면·원격 인프라 구축, 국가기술자격 검정지원, 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지원

○ 내일배움카드(일반): 4,263억원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①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K-Digital Training) 및 ② 일반고 3학년생·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훈련실시, ③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및 심층 경력설계 지원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42억원

- 특성화고(직업교육, 40개 학과)와 신산업분야 민간훈련기관(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체계적 교육·훈련 과정 운영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 3억원

- 고용보험 미적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214억원

-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평가 실시, 스마트훈련 전환 지원 등 철저한 훈련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하여 효과성 제고
- * 훈련기관 평가(47억원), 훈련과정 심사(65억원), 훈련과정평가(50억원), 중앙부처 사업평가(19억원), 스마트훈련 전환 지원(33억원)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408억원

- 자격검정 사업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비용 지원
- * 자격검정사업(1,045억원), 외국인고용관리사업(161억원), HRD확산 및 역량강화(90억원), 국제교류협력사업(9억원), 경상운영비(1,289억원) 및 자체수입(△1,186억원)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249억원

- 로봇, 3D 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NCS 개발·보완
- HRD 컨퍼런스·직업방송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핵심 인프라에 대한 운영 지원
- * NCS 개발(10직무) 및 개선(110직무), 컨설팅 지원(700개) 등

○ **숙련기술장려사업: 283억원**

- 최고의 숙련기술을 갖춘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 * 국제기능올림픽 46억원,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4억원, 전국(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114억원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57억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 지원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2,241억원**

- 학위과정 훈련을 위한 인력개발사업, 시설확충 등 한국폴리텍대학 운영비용 지원
- * 인력개발사업(399억원), 시설확충사업(237억원), 정보전산화사업비(38억원), 경상운영비(1,985억원) 및 자체수입(△418억원)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292억원**

- BTL 사업 정부지급금
- * 24개 캠퍼스 임차료 201억원, 운영비 91억원

○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866억원**

- 우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실천공학기술자 등 직업능력개발 전문가의 안정적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 * 직업훈련교원및HRD담당자양성(216억원), 직업훈련교원재·향상연수(266억원),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384억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403억원**

- 기관운영비, 교육시설증축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비용 지원
- * 시설확충 및 개보수사업(128억원), 대학정보화사업(9억원), 연구학생지원비(27억원), 기관운영비(464억원) 및 자체수입(△225억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32억원**

- 기숙사 및 공학관에 대한 BTL사업 정부지급금
- * 임차료(22억원) 및 운영비(10억원)

< '22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790,041	1,035,265	245,224	31.0
○ 내일배움카드(일반)	214,504	426,294	211,790	98.7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840	4,200	3,360	400.0
○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366	348	△18	△4.9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22,005	21,366	△639	△2.9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22,201	24,863	2,662	12.0
○ 숙련기술장려사업	24,289	28,261	3,972	16.4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34,142	140,841	6,699	5.0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6,474	5,739	△735	△11.4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220,270	224,142	3,872	1.8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26,821	29,232	2,411	9.0
○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79,783	86,560	6,777	8.5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35,010	40,251	5,241	15.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3,336	3,168	△168	△5.0

7] 노사정책 사업

❖ 노사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반 마련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155억원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의 노사공동 이익증진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지원
-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노사협력 체제 및 체계적 노사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현장의 상생의 노사관계 인식 제고 및 상생협력 지원 등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79억원

- 노사관계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노사관계 문제해결 능력 제고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6억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인적 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노사발전재단지원: 226억원

-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사관계 교육, 노동분야 국제교류, 노사파트너십 증진, 차별개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 등 지원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53,954	57,578	3,624	6.7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16,966	15,525	△1,441	△8.5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4,122	17,894	3,772	26.7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676	1,602	△74	△4.4
○ 노사발전재단 지원	21,190	22,557	1,367	6.5

8 근로조건 보호

-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장시간근로·차별 등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인프라 구축 추진

○ 근로조건개선지원: 150억원

- (권리구제지원팀운영)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조정관을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 대한 신속한 상담·조정서비스 제공
-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감독을 하는 대신, 공인노무사, 노사단체, 업종별단체 등 노무관리 전문가가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
- (장시간근로개선지원)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근로자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지도)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운영, 정책광고 및 홍보 등을 통한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근로자 권리보호의 기본이 되는 서면 근로계약서의 현장 확산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제작·배포 및 안내사업 추진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연소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안내 및 사업장 지도·감독 실시
- (직장내괴롭힘예방및근절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피해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 및 대응방안 제공 등 지원체계 구축

○ 근로감독역량강화: 110억원

-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근로기준법제 개선 연구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감독지원 인프라 확충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42억원

-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 지원)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정책 연구 등을 통한 법·제도개선
- (플랫폼 종사자 보호 지원)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들의 사회적 보호·지원을 위해 일터 개선 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 실시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5.18. 공포, 11.19.시행)에 따라,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시책 수립 등 법률상 정부의 책무 이행 위한 사업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7억원

-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확산에 필요한 교육·인식개선·연구센터 위탁운영, 제도개선 등

○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 15억원

-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자회사·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원
- 정규직전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환경변화로 인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을 예방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 공무직위원회 운영: 9억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또는 기간제의 인사노무관리 및 처우의 기준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공무직위원회 운영지원

< '22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31,049	34,224	3,175	10.2
○ 근로조건개선지원	15,043	15,818	△776	△5.2
○ 근로감독역량강화	11,033	11,059	26	0.2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1,768	4,228	2,460	139.1
○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	757	719	△38	△5.0
○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	1,489	1,489	0	0.0
○ 공무직위원회 운영	959	911	△48	△5.0

9] 산업재해예방사업

❖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등을 통해 광산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 진폐위로금 지급: 881억원

-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해 및 유족위로금,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10.11월 이후 신규 진폐 판정자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1,040일(1급)~215일(13급)분 지급]

○ 건강진단: 16억원

- 광산업 종사 및 이직근로자에 대한 1·2차 진폐건강진단 비용 지원

○ 건강진단지원금: 13억원

- 건강진단 부대비용(5.8억원), 기본경비(6.8억원) 등 진폐예방사업 추진 경비

< '22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92,211	90,955	△1,256	△1.4
○ 진폐위로금 지급	89,349	88,106	△1,243	△1.4
○ 건강진단	1,628	1,589	△39	△2.4
○ 건강진단지원금	1,234	1,260	26	2.1

10 국제협력사업

- ❖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FTA 협상 참여 및 주요 FTA 발효에 따른 이행체제 구축
-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교류협력 등 한국의 발전경험을 제공하여 수원국의 자립성장 및 사회발전에 기여
-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 ILO 분담금: 의무 분담금 120억원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8억원

- 한·OECD 협력지원(0.7억원),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 교류(0.6억원), 고용노동 통상협상 대책 추진(3.1억원) 한-EU 및 한-미 FTA 협정 이행 대응(3.6억원)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76억원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53.5억원),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1.1억원), 한·ILO 협력사업 (20.9억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48억원

- 외국인취업자관리(28.9억원),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18.9억원)

< '22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24,320	25,218	898	3.6
○ ILO 분담금(ODA)	11,567	12,088	521	4.5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763	793	30	3.9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7,276	7,555	279	3.8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4,714	4,782	68	1.4

11 고용노동행정지원

- ❖ 본부, 지방관서 및 위원회 운영과 업무환경개선 등
- ❖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비용 지원

○ 정책연구개발(R&D): 8.5억원

- 정책대안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사업

○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27억원

- 행정쇄신·생활공감정책 추진,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정책고객 소통강화,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지원 등

* 양성평등정책지원(1.5억) →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내역사업으로 이관

○ 고용노동행정(정보화): 289억원

- 정보시스템(노사누리, 전자민원 등) 구축·운영, 전산장비 구매 등

○ 청·관사 유지 및 시설관리: 151억원

- 지방관서 청·관사 보증금 및 임차비용, 청사 유지보수 등

○ 노동위원회 운영: 130억원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79억원), 청사관리(20억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11억원), 정보화 운영(20억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34억원

- 회의체 운영비(11억원), 사무처 운영 및 인건비(12억원), 청사관리(10억원)

○ 일자리위원회 운영: 35억원

- 일자리위원회 인건비(4억원) 및 운영비(31억원)

○ 고객상담센터 운영: 71억원

- 고객상담센터 운영비 및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58억원), 전산 시스템 개선*(10억원),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도입(3억원) 등

*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전화상담 AP 및 DB 서버 고도화, 보안 강화 시스템 도입 등

○ 제주도 이관업무 지원(균특회계): 150억원

- 직업안정기관운영(10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130억원), 내일배움카드(1억원), 제주노동위원회지원(13억원),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32억원)

< '22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75,510	93,329	17,819	23.6
○ 정책연구개발(R&D)	815	856	41	5.0
○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지원	152	△152	순감	-
○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2,481	2,703	222	8.9
○ 고용노동행정(정보화)	22,664	28,926	6,262	27.6
○ 노동위원회청사관리	1,603	1,995	392	24.5
○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9,325	15,063	5,783	62.0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6,666	7,892	1,226	18.4
○ 무료법률서비스지원	989	1,125	136	13.8
○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723	1,965	1,242	171.8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3,414	3,355	△59	△1.7
○ 일자리위원회운영	7,054	3,485	△3,569	△50.6
○ 고객상담센터 운영	6,469	7,149	680	10.5
○ 자치단체 이관 사업 지원(균특)	13,155	18,663	5,508	69.9

* ('21)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지원 사업 예산: 152백만원 → ('22) 고용노동행정혁신역량강화 내역사업으로 이관(152백만원, 전년동) ➡ 22년 예산요구 및 조정안 총액에 포함

12 정부 내부 거래

❖ 고용보험사업,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위한 기금 전출금

○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13,000억원

- 모성보호지원: 3,000억원
-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8,000억원
- 실업급여계정 이자비용 등 한시지원: 2,000억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의 전출금: 183억원

- 산재보험운영 소요경비 지원: 63억원
- 산재예방사업 소요경비 지원: 120억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의 전출금: 0원

< '22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816,582	1,318,300	502,282	61.5
○고용보험기금 전출(고용보험운영)	200	0	△200	△100.0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220,000	300,000	80,000	36.4
○고용보험기금 전출(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580,000	800,000	220,000	37.9
○고용보험기금 전출(실업급여계정 이자비용 등 한시지원)	-	200,000	200,000	순증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산재보험운영)	6,300	6,300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산재예방사업)	10,000	12,000	2,000	20.0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 (임채기금 운영)	82	0	△82	△100.0

2. 고용보험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2년도 수입계획은 18조 6,586억원('21년 대비 0.6% 증가)

* 여유자금회수(4조 462억원)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22조 7,049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총 계(A+B+C)	22,434,761	22,704,851	270,090	1.2
수입계(A+B)	18,549,900	18,658,629	108,729	0.6
□ 자체수입(A)	14,549,700	16,058,629	1,508,929	10.4
○ 고용보험료	13,915,976	15,417,940	1,501,964	10.8
○ 재산수입·음자회수 등	633,724	640,689	6,965	1.1
□ 정부내부수입(B)	4,000,200	2,600,000	△1,400,200	△35.0
○ 일반회계 전입금	800,200	1,300,000	499,800	62.5
○ 공자기금 예수금	3,200,000	1,300,000	△1,900,000	△59.4
□ 여유자금회수(C)	3,884,861	4,046,222	161,361	4.2

□ 지 출

- '22년도 지출계획은 19조 172억원('21년 대비 0.2% 증가)

* 여유자금운용(3조 6,876억원)을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22조 7,049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총 계(A+B+C)	22,434,761	22,704,851	270,090	1.2
지출계(A+B)	18,978,679	19,017,237	38,558	0.2
□ 지출(A)	18,844,279	18,840,543	△3,736	△0.0
○ 고용창출	3,406,487	2,876,332	△530,155	△15.6
○ 직업능력개발	1,640,327	1,599,850	△40,477	△2.5
○ 고용안전망확충	11,733,563	11,938,398	204,835	1.7
○ 고용평등증진	1,961,054	2,308,259	347,205	17.7
○ 고용노동행정지원	102,848	117,704	14,856	14.4
□ 정부내부지출(B) (공자기금 예수이자)	134,400	176,694	42,294	31.5
□ 여유자금운용(C)	3,456,082	3,687,614	231,532	6.7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일자리 안전망 강화

- ❖ 실직시 생활안정을 도모,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등 지원
- ❖ 실업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11조 5,339억원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①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활동기간에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② 지급

- ①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
- ②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
- ③ '21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30,060원~60,120원(소정근로시간 비례)

○ 조기재취업수당: 3,656억원

- 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자영업자 실업급여: 89억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자에게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19.10.1 이전 이직자는 50%, 90~180일)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후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

○ 실업크레딧지원: 300억원

- 일정 소득^① 이하인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②를 지원

① 재산 6억원, 소득 1,680만원 이하

② 일반회계 25%, 고보기금 25%(고용부), 국민연금기금 25%(복지부), 자부담 25%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11,733,563	11,938,398	204,835	1.7
○ 구직급여	11,348,600	11,533,853	185,253	1.6
○ 조기재취업수당	347,392	365,635	18,243	5.3
○ 자영업자 실업급여	5,558	8,869	3,311	59.6
○ 실업크레딧 지원	32,013	30,041	△1,972	△6.2

② 고용창출 지원

- ❖ 취업 취약계층 고용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지원
- ❖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여 고용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고용창출력 제고

○ 고용창출장려금: 6,869억원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고용, 장년 고용,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인원 및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천명)

구 분	'21년		'22년 계획		비 고
	지원 인원	금액 (본예산)	지원 인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	40	186,481	155	686,888	
① 고용촉진장려금	12*	94,220	28*	125,954	○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21년) 12,450명 → ('22년) 27,901명 -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계속 지원 및 '20년·'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무기계약 채용(전환) 추가지원 수요 반영
②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0.1	538	0.05	210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20년 종료, 잔여 사업비) * ('21년) 140명 → ('21년) 46명
③ 장년고용지원	5.1	24,288	4.9	21,859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인원 변동 * ('20년) 5,100명 → ('22년) 4,924명
④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21.7	64,625	11.6	40,797	○ 근로시간단축, 교대제 개편 등으로 일자리 증가시 지원 - 주52시간 전면 시행에 따른 신규 지원 중단 반영 * ('21년) 21,704명 → ('22년) 11,561명
⑤ 지역성장산업지원	0.3	1,728	0.2	1,164	○ 국내복귀기업 일자리 증가시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인원 변동 * ('21년) 330명 → ('22년) 216명
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	110.2	495,900	○ '21년 청년 정규직 채용자 잔여지원 소요 반영 * ('21년) 5만명 → ('22년) 11만명

* '20년·'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계속 지원 인원 제외(5만명, 0.5만명)

* 내역사업 예산에서 운영비 제외(합계에는 포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한시): 9,952억원

-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시 1인당 年 900만원(월 75만원, 최대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30인~99인 사업장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가능)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6억원

- 고용위기 지역에서 사업장 신설·이전·증설을 유도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고용창출 활성화 지원

○ 고용장려금(융자): 55억원

- 기업이 고령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세대간상생고용지원('18년 종료): 13억원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고용 노력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1인당 연 1,080만원 지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1,403,529	1,693,527	289,998	20.7
○ 고용창출장려금	186,481	686,888	500,407	268.3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01,802	995,210	△206,592	△17.2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746	4,641	△105	△2.2
○ 고용장려금(융자)	9,167	5,455	△3,712	△40.5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1,333	1,333	-	-

③ 고용유지·안정 지원

- ❖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친화적 일자리 개편시 일자리의 질 제고 지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도모
- ❖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고용유지지원금: 5,981억원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휴업·휴직수당) 지원
 - * 총 5,976억원(유급휴업 2,770억원, 유급휴직 3,126억원, 무급휴업휴직 80억원)
-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21년 사업종료에 따라 잔여사업비 편성(1.5억원)
 -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20년 추경 신설, 한시사업)
- (고용유지비용대부 채권관리비용) '21년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종료에 따라 상환업무지원을 위한 소송비, 운영비 등 채권관리비용(2.9억원)
 - *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20년 추경 신설, 한시사업)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264억

- 60세이상 근로자를 신규(계속) 고용하여 고용이 증가하거나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통해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①와 임금피크제(근로시간단축)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②를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

① (신설)고령자고용지원금(6,000명, 54억),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3,000명, 108억),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및 정년연장지원금 (1,719명, 21억)

② 임금피크제(근로시간단축)지원금(1,080명, 81억)

○ 일터혁신지원: 257억원

- 재정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조건 향상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맞춤형 전문컨설팅과 노사가 상생하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 전문컨설팅 지원 계속: ('21년) 2,480건 → ('22년) 2,836건

↳ 전문컨설팅 분야('21년 기준): ①노사파트너십, ②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③고용문화개선, ④임금체계 개선, ⑤평가체계 개선, ⑥장시간근로개선,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장년고용안정지원, ⑨안전일터 조성

*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예산: ('21년) 15억원 → ('21년) 18억원

○ 고용안정장려금: 1,852억원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또는 육아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고용하여 고용안정을 지원

*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10,000명 → 13,268명

* 정규직전환 지원인원 전년 수준: 5,050명 → 5,050명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전년 수준: 10,935명 → 10,935명

*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18,823명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내역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1년 계획		'22년 계획		비 고
	지원 인원	금액	지원 인원	금액	
고용안정장려금	55,656	154,979	53,616	185,191	
①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10,000	18,175	13,268	24,079	○지원인원 +3,268명, 간접노무비 지원단가 인상
② 정규직 전환 지원	5,050	15,331	5,050	15,331	○지원인원 전년대 동일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4,798	35,092	10,935	22,348	○유연근무제 지원사업 내실화로 지원단가 축소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지원종료
④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25,808	86,381	24,363	123,433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지원 11,576명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지원 7,247명

○ 모성보호육아지원: 1조 9,333억원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3+3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 50→80%),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미만)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 (月 최대 300만원) 지원

○ 직장어린이집지원: 1,260억원

-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근로복지공단 위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17억원

-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3,333,886	2,906,317	△427,569	△12.8
○ 고용유지지원금	1,372,832	598,058	△774,774	△56.4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53,592	26,407	△27,185	△50.7
○ 일터혁신지원	22,054	25,720	3,666	16.6
○ 고용안정장려금	154,979	185,191	30,212	19.5
○ 모성보호육아지원	1,591,537	1,933,301	341,764	21.5
○ 직장어린이집지원	127,092	125,965	△1,127	△0.9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1,800	11,675	△125	△1.1

④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 취업지원 및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 ❖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청년내일채움공제: 4,344억원

-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22년, 신규 7만명), 기업자부담 조정* 등 제도개편 병행

*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자부담률) ▲30~49人: 0 → 20% ▲50~199人: 20 → 50% ▲200人이상: 20 → 100%

○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116억원

- 기능향상훈련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생활안정 지원(훈련장려금 지급) 및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69억원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대상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 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운영지원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511,286	452,938	△58,348	△11.4
○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493,592	434,414	△59,178	△12.0
○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10,649	11,629	980	9.2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7,045	6,895	△150	△2.1

⑤ 직업능력개발 지원

- ❖ K-Digital Platform, 폴리텍 신기술 학과 확충 등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
-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 양성 등 훈련의 고용안전망 기능 강화

○ 내일배움카드(고보): 7,983억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기술 직종, 국가적·전략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의 인력을 집중 양성
 - * 훈련계획인원 : ('21년) 75천명 → ('22년) 64천명
- (일반직종훈련) 실업자 및 재직자가 취·창업 등을 위해 직무능력 개발에 필요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 훈련계획인원 : ('21년) 386천명 → ('22년) 367천명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 훈련을 수시 공급하고,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 지원
 - * 훈련계획인원 : ('22년, 신규) 25천명

○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2,744억원

-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유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노동자의 생산성·문제해결능력 제고에 기여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 훈련계획인원 : ('21년) 2,459,276명 → ('22년) 3,190,119명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319억원

-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소외지역 등에 훈련을 제공

- 인프라가 부족하여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구직자 등에게 디지털 훈련 시설·장비를 공유하여 지역의 훈련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K-Digital Platform 확대

* ('21) 5개소 → ('22) 20개소

- 산업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새로운 직무분야 훈련을 통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전환특화 공동훈련센터' 15개소 선정

○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 111억원

- 기업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기준 제시를 통하여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산업현장교수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련기술전수 등 실시

* 산업현장교수지원 103억, 기업인적자원개발인증 8억원

○ 외국인력고용지원: 26억원

- 외국인근로자 입국초기 취업적응지원,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훈련,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교육 등 실시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2,866억원

- 학습근로자가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해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하며 배우는 훈련 인프라 지원
-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 재학생 대상 일학습병행 및 도제학교 졸업생 대상 고속련 기술훈련(P-TECH) 확대 지원

* ▲(전문대 재학단계) ('21) 12개소 → ('22) 16개소, ▲(도제학교) ('21) 66개사업단 → ('22) 75개 사업단 ▲ (P-TECH) ('21) 50개소 → ('22) 60개소

○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539억원

- 폴리텍 신기술 학과 확충, 하이테크 과정 확대 등 유망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하이테크과정 : ('21) 1,095명 → ('22) 1,230명

* 하이테크학과신설·개편 : ('21) 신설 3개 → ('22) 개편 5개

-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지속
- * 신중년특화과정 : ('21) 900명 → ('22) 2,500명(베이비부머 통합 운영)
- * 여성재취업훈련 : ('21) 1,200명 → ('22) 1,700명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410억원**

-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로 생계비 대부
- * 대부인원 : ('21) 9,000명 → ('22) 8,500명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1,640,327	1,599,850	△ 40,477	△ 2.5
○ 내일배움카드(고보)	800,501	798,296	△ 2,205	△ 0.3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76,304	274,429	△ 1,875	△ 0.7
○ 국가인적자원개발 권소사업지원	114,325	131,882	17,557	15.4
○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1,523	11,121	△ 402	△ 3.5
○ 외국인력고용지원	2,318	2,597	279	12.0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317,921	286,608	△ 31,313	△ 9.8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73,992	53,887	△ 20,105	△ 27.2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43,443	41,030	△ 2,413	△ 5.6

⑥ 고용서비스 및 고용정책 기반 구축 지원

- ❖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및 고용보험제도 운영
- ❖ 일자리·훈련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노동시장 정보 분석 등을 통해 고용정책 수립 지원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89억원

-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및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등 실시

○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332억원

-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 고용보험 등 제도안내 등을 위한 고객지원 센터 운영 및 보험사무대행 지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변경(정정)·이직확인 등에 관한 관리업무 수행

○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54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고용보험 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39억원

- 고용보험 적용·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전국민 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 일용근로자·특고 소득신고 주기를 매월로 단축('21.7월 시행), 플랫폼사업주에게 고용보험신고 원천공제 의무 부과('22.1월 시행) 등에 따른 시스템 구축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34억원

-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시스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 일자리, 직업훈련 등의 고용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망 운영·관리 비용
-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관련 법·제도 변경사항을 정보 시스템에 반영

○ 고객상담센터지원: 170억원

-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350' 및 고용센터 대표전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고용 분야 상담 서비스 제공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103,840	131,809	27,969	26.9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7,041	8,935	1,894	26.9
○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28,337	33,208	4,871	17.2
○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5,281	15,416	135	0.9
○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5,118	23,881	18,763	366.6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3,405	33,359	△46	△0.1
○ 고객상담센터지원	14,658	17,010	2,352	16.0

7 고용보험사업 운영 등

- ❖ 적용·징수 업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및 피보험자 관리, 고용보험 연구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 상환

○ 기금운영비(고용보험 적용·징수 및 고용보험사업 운영): 1,130억원

-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에 따른 운영비(851억원)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11억원),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129억원) 등

- 고용보험사업 운영비(279억원)

* 고용보험기금 내 기금운영, 고용안정·창출사업, 모성보호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기금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 고용보험연구개발: 42억원

-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23억원), 고용보험연구용역(13억원), 한국 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연구지원(6억원)

○ 자영업자 기금운영비: 6억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안내(4.4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1.2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767억원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237,248	294,398	57,150	24.1
○ 기금운영비(일반)	98,335	112,973	14,638	14.9
○ 고용보험연구개발	3,946	4,168	222	5.6
○ 기금운영비(자영업자)	567	563	△4	△0.7
○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134,400	176,694	42,294	31.5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2년도 순수입은 9조 1,505억원('21년 대비 4.3% 감소)
- 여유자금회수 등(8조 9,902억원)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18조 1,40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18,196,438	18,140,713	△ 55,725	△ 0.3
☐ 순수입	9,562,412	9,150,501	△ 411,911	△ 4.3
○ 산재보험료	8,669,600	8,319,828	△ 349,772	△ 4.0
○ 이자·융자회수 등	876,512	812,374	△ 64,138	△ 7.3
○ 일반회계 전입금	16,300	18,300	2,000	12.3
☐ 여유자금 회수 등	8,634,026	8,990,212	356,186	4.1

☐ 지 출

-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22년도 기금 총지출은 총 8조 8,844억원으로 '21년보다 7,854억원(9.7%) 증가
-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은 8,411억원(8.3%)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18,196,438	18,140,713	△ 55,725	△ 0.3
☐ 총지출	8,099,027	8,884,420	785,393	9.7
○ 산재보험사업	6,724,416	7,373,606	649,190	9.7
○ 산재예방사업	977,023	1,092,165	115,142	11.8
○ 고용노동행정지원	397,588	418,649	21,061	5.3
☐ 여유자금 운용 등	10,097,411	9,256,293	△ 841,118	△ 8.3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산재보험사업

- ❖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등 보호에 기여
- ❖ 재활서비스 지원강화로 산재노동자 직업·사회복귀 촉진 및 산재병원 인프라 확충 지원

<산재보험급여>

○ 요양급여: 1조 6,144억원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치료비 등 지급

* ('21년) 264,419명 → ('22년) 299,855명

○ 휴업급여: 1조 8,027억원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21년) 168,007명 → ('22년) 158,769명

○ 장해급여: 2조 2,846억원

-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14급 판정자에게 지급

* 연금: 329일분(1급)~138일분(7급), 일시금: 1,474일분(1급)~55일분(14급)

* ('21년) 91,931명 → ('22년) 97,665명

○ 유족급여: 8,618억원

- 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21년) 33,980명 → ('22년) 34,096명

○ 간병급여: 560억원

-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 상시: 전문 44,760원, 가족/기타 41,170원, 수시: 전문 29,840원, 가족/기타 27,450원

* ('21년) 5,185명 → ('22년) 5,040명

○ 상병보상연금: 1,405억원

- 2년 이상 요양중인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 제3급 해당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평균임금 329일분 ~ 257일분 지급

* ('21년) 3,674명 → ('22년) 3,467명

○ 장례비: 401억원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21년 최고 16,335천원, 최저 11,729천원

* ('21년) 3,139명 → ('22년) 2,874명

○ 직업재활급여: 317억원

- 요양종결 이후 산재보험법상 장애등급 1~12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을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등을 위해 지급

* ('21년) 3,941명 → ('22년) 3,276명

○ 진폐급여: 3,145억원

- 요양하거나 진폐장애 판정을 받은 진폐노동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

*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최저임금의 60%)과 진폐장해연금(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평균임금의 2일 ~ 11일분)을 합한 금액을 지급, 진폐유족연금은 사망전 진폐보상연금 금액을 지급(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1) 16,916명 → ('22) 13,721명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 산재보험급여	6,523,565	7,146,284	622,719	9.5
○ 요양급여	1,348,114	1,614,365	266,251	19.7
○ 휴업급여	1,538,710	1,802,706	263,996	17.2
○ 장애급여	2,233,283	2,284,648	51,365	2.3
○ 유족급여	842,852	861,764	18,912	2.2
○ 간병급여	59,760	56,029	△ 3,731	△ 6.2
○ 상병보상연금	161,408	140,479	△ 20,929	△ 13.0
○ 장례비	41,202	40,075	△ 1,127	△ 2.7
○ 직업재활급여	17,603	31,700	14,097	80.1
○ 진폐연금	280,633	314,518	33,885	12.1

<산재근로자 재활 및 의료사업 지원>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67억원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75,819명, 600억원)
- 직업훈련 지원(144명, 4억원), 직장복귀 지원(27억원)
- 사회심리재활 지원(8,087명, 25억원)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지원(53명, 6억원), 맞춤형서비스지원(73억원)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1,427명, 32억원)

○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지원: 103억원

- 연구기관지원(2개소, 71억원), 케어센터지원(2개소, 32억원)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7억원

- 의료기관 평가(2.7억원)
-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12.3억원)
-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및 인프라 구축(10.7억원)
- 출퇴근 재해 보호지원(71억원)

○ 산재병원 지원: 548억원

- 산재병원지원(재활전문센터 및 산재병원 본부 운영비 지원, 90억원)
- 산재병원시설장비지원(의료장비현대화 36억원, 노후안전시설개보수 193억원)
- 울산산재병원신축지원(공사비 229억원)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126,645	151,413	24,768	19.6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6,724	76,654	△70	△0.1
○ 연구기관및케어센터지원	10,275	10,275	0	0.0
○ 요양관리	9,664	9,664	0	0.0
○ 산재병원 지원	29,982	54,820	24,838	82.8

<산재보험사업의 위탁운영 및 지원>

○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419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 징수위탁 지원(176억원)
-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244억원)

* 근로자정보조사원(180명) 차별시정을 위한 가족수당 등 106백만원 편성

○ 산재보험시설 건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182억원

- 산재보험시설건립(72억원)
 - * 경인지역본부 재건축(63억원), 근로복지공단본부 비상발전기 설치 등(9억원)
- 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구축(110억원)

○ 산재보험 위탁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2,536억원

- 근로복지공단 직원 인건비(2,029억원)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363억원)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지원(113억원)
- 청사임차보증금 지원(31억원)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299,624	313,819	14,195	4.7
○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42,093	41,996	△ 97	△ 0.2
○ 산재보험시설 건립	2,313	7,148	4,835	209.0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	14,145	11,021	△ 3,124	△ 22.1
○ 산재보험 위탁 운영경비	241,073	253,654	12,581	5.2

② 산업재해예방 사업

- ❖ 고위험 영역 커버리지 강화 및 기업의 자율 안전기반 구축
- ❖ 취약계층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 강화
- ❖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 지원 및 산재예방 생활인프라 확충

<안전보건재정지원>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509억원(중 236억원)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을 지원 : 1,197억원

※ (제조·서비스) 2,900→4,000개소, 342억원 / (화재·폭발·폭염 등 위험요인 지원) 2,200개소, 140억원 / (건설업) 6,900→8,900개소, 715억원

- (안전투자 혁신사업)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 : 3,271억원

※ (위험기계·기구) 4,911→4,348대, 1,762억원/(위험공정·장비) 921→1,509개소, 1,509억원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수행경비: 40억원

※ 사후관리 위탁수수료, 자료제작, 사업수행여비, 사업성과 평가용역 등 사업수행경비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427,292	450,853	23,561	5.5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27,292	450,853	23,561	5.5

<안전보건기술지원>

○ 업종별재해예방: 914억원(증 218억원)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306억원),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450억원),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36억원),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122억원)
- * (증액)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71,640→93,000회, +2식, 증 56억원),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증 4억원),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증 1억원),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409→290천회, 증 90억원),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산재예방(증 8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26,500→28,000건, 증 1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신규, 58억원)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79억원(증 11억원)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39억원),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30억원), 산업용 기계기구 안전인증(2억원),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7억원)
- * (증액)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QR코드 관리(36만대, 증 7억원), 방호장치 인증물량 (5,600→5,995건, 1억원), 방호장치 안전성능 검사장비 구매 및 완료소요(4종, 증 3억원)

○ 유해작업환경개선: 793억원(증 178억원)

- 취약계층 고위험환경 개선지원(664억원),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34억원),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33억원),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63억원)
- * (증액)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50,000→74,000개소, 증 86억원, 30인 미만 사업장 까지 지원 확대),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35만→53만명, 증 102억원,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확대)
- * (감액)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감 4억원), 직종별 건강진단(59,000→47,000명, 감 7억원)

○ 근로자건강보호: 418억원(증 53억원)

- 근로자건강센터(205억원),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34억원),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29억원),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29억원),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19억원),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25억원), 감정노동자 보호사업(4억원),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74억원)

- * (증액) 집단역학조사(4→5건, 증 1억원), 직업성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신규, 74억원)
- * (감액) 근로자건강센터(장비완료소요 및 증원인건비 2개월분, 감 2억원),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전산 완료소요 등 감 7억원),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20→15개/인, 감 13억원)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174,862	220,819	45,957	26.3
○ 업종별재해예방	69,571	91,386	21,815	31.4
○ 안전인증및안전검사	6,763	7,855	1,092	16.1
○ 유해작업환경개선	61,592	79,348	17,756	28.8
○ 근로자건강보호	36,531	41,825	5,294	14.5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405	405	0	0

<안전보건기반조성>

○ 안전보건문화정착: 294억원(증 7억원)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160억원), 전문교육과정운영(41억원), 안전보건문화선진화(70억원), 민간재해예방활동지원(23억원)

* (증액) 홍보사업(추락·끼임 캠페인, 증 10억원), 업무직 최저임금 소요(증 1억원)

* (감액) 안전문화사업(△10%, 감 1억원), 민간재해예방활동지원(△10%, 감 3억원)

○ 산재예방시설 건립: 230억원(증 118억원)

-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4차년도 144억원, 증 101억원)
- 중부 안전체험교육장 시설 개선(2차년도 48억원, 증 41억원)

- 익산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3차년도 38억원, 증 32억원)
- 호남 안전체험교육장 시설 개선(완료소요, 감 54억원)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59억원(전년 동)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59억원)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45,705	58,221	12,516	27.4
○ 안전보건문화정착	28,672	29,351	679	2.4
○ 산재예방시설건립	11,173	23,006	11,833	105.9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5,860	5,864	4	0.1

<안전보건연구개발>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59억원(감 5억원)

- 안전보건연구사업(43억원), 국제협력사업(9억원), 산업재해통계(7억원)

* (감액) 제10차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완료소요(1회, 감 5억원)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6,406	5,944	-462	△7.2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6,406	5,944	-462	△7.2

<산재예방위탁운영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비: 1,578억원(증 79억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 1,412억원(증 70억원)

* (증원인건비) '21년 정기(60명, 1,699백만원), '21년 수시(32명 1,597백만원), '22년 정기(66명, 1,751백만원)

* (공통처우개선분) 1,926백만원(1.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 157억원(증 13억원)

* 임차및관리비(8억원), 노후청사 유지보수비(3억원), 최저임금소요(1억원), 공통절감(△1억원)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9억원)

* '21년 신설청사 보증금 완료소요(감 3억원)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149,859	157,856	7,997	5.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134,266	141,239	6,973	5.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14,341	15,670	1,329	9.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1,252	947	△305	△24.4

③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용자

- ❖ 산재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도모
- ❖ 유해위험설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지원

○ 생활안정자금 용자: 157억원

- 산재근로자와 가족에게 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요양비 등 대부
 - *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2,000만원 한도, 연리 1.25%, 지원대상 1,677명
 - * 물량: ('21년) 1,677명 → ('22년) 1,696명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1억원

- 산재근로자 중 창업희망자에게 점포임대 지원('19년 신규지원중단)
 - * 1인당 1.5억원 한도, 최장 6년간 연리 2%
 - * 물량: 신규지원대상 0명 (기존 지원자의 이전계약 및 임대료 상향지원)

○ 산재예방시설용자: 3,563억원

-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설비·기계기구 및 작업환경 개선비용 용자 지원
 - * (증액)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 확대(1,830→2,020개소, 증 336억원, 증 10.4%)
 -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1.5%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338,413	372,072	33,659	9.9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창업점포지원 통합편성)	15,655	15,744	89	0.6
○ 산재예방시설용자	322,758	356,328	33,570	10.4

4 산재보험및예방사업 운영비

- ❖

기금관리비 및 산재보험·산재예방제도 운영 지원
- ❖

산재보험 및 예방제도 관련 연구용역

○ 인건비: 25억원

- 기금관리보조요원 및 산업안전정책 전문위원 인건비 등

○ 기타경비: 41억원

- 산재보험기금운용,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기본운영경비 등

○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6억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관련 연구용역비 등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6,656	7,139	483	7.3
○ 기금관리비 인건비	125	127	2	1.6
○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152	154	2	1.3
○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1,733	2,204	471	27.2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386	373	△13	△3.4
○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760	882	122	16.1
○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2,900	2,799	△101	△3.5
○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600	600	0	0.0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2년도 순수입은 7,914억원('21년도 대비 5.8% 감소)

- 여유자금회수 등을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1조 8,746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1,677,204	1,874,576	197,372	11.8
☐ 순수입	840,324	791,434	-48,890	-5.8
○ 자체수입	830,605	783,403	-47,202	-5.7
- 법정부담금	807,045	756,898	-50,147	-6.2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3,555	15,479	1,924	14.2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10,005	11,026	1,021	10.2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9,719	8,031	-1,688	-17.4
☐ 여유자금 회수 등	836,880	1,083,142	246,262	29.4

☐ 지 출

○ '22년도 총지출은 7,663억원('21년도 대비 12.9% 증가)

○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6,080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감	
			(B-A)	%
계	1,677,204	1,874,576	197,372	11.8
☐ 총지출	678,934	766,268	87,334	12.9
○ 경상사업비	603,901	687,413	83,512	13.8
- 장애인고용장려금	252,191	262,422	10,231	4.1
- 장애인고용 및 취업지원	213,727	271,023	57,296	26.8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등	137,983	153,968	15,985	11.6
○ 기금운영비	75,033	78,855	3,822	5.1
☐ 정부내부지출	300,000	500,320	200,320	66.8
☐ 여유자금운용	698,270	607,988	-90,282	-12.9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2,624억원

- 의무고용률 3.1%(민간기관)~3.4%(공공기관)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0~80만원 장려금 지급

* 장애인고용장려금: ('21년) 566천명, 2,522억원 → ('22년) 584천명, 2,544억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장애인 신규 고용 인센티브 부여

* (신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22년) 2,860명, 80억원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107억원

- 근로지원인 지원확대(▲지원인원: 8,000 → 10,000명, ▲지원단가 확대: 시간당 13,044 → 13,786원)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지원 강화

* 근로지원인: ('21년) 8,000명, 155,185백만원 → ('22년) 10,000명, 204,713백만원

- 중증장애인의 직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작업지도원 등을 선임·배치하는 경우 월 1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22년 850백만원>

- 장애인 고용 편의시설, 통근용승합차 등 지원<'22년 3,450백만원>
↳ 사업주당 3억원(장애인 1인당 1천만원, 중증 1천5백만원) 한도로 지원

- 장애인 근로자 고충상담 및 조정 역할 수행하는 장애인 근로지원 센터(장애인근로자의 애로·고충문제 중재 및 조정자 역할 수행) 지원 <'22년 1,658백만원>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3,850명): 26억원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 지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 대해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실비) 지급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120개소): 364억원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등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 시설·장비 투자비의 75% 지원(1명 고용창출 시 3,000만원, 20억원 한도)

* ('22년) 일반·사회사업 90(+20), 사회적 경제기업형 25(+10), 컨소시엄형 5개소

○ 보조공학기기지원(13천점): 167억원

-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 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까지 지원

* ('2년) 1.2만점 14,437백만원 → ('22년) 1.3만점 16,660백만원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90억원

-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고용 및 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융자

* 1인당 1억원, 사업주당 15억원(3년거치 5년상환, 이율 1%)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468,382	537,825	69,443	14.8
○ 장애인고용장려금	252,191	262,422	10,231	4.1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61,192	210,671	49,479	30.7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3,065	2,610	△455	△14.8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28,472	36,437	7,965	28.0
○ 보조공학기기지원	14,437	16,660	2,223	15.4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9,025	9,025	-	-

② 맞춤형 장애인 취업지원

❖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취업지원: 306억원

- 중증장애인에 대해 현장훈련과 고용 후 적응지도하는 지원고용 (▲지원인원: 5,000 → 6,000명, ▲지원단가 확대: 일비 17,000 → 18,000원)*, 중증장애인 인턴제(400명 → 600명)** 지원 확대
 - * (현장훈련) 3~7주,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적응지도) 6개월, 6개월 한도 연장 가능
 - ** (인턴채용지원금) 월 80만원, 6개월, (정규직 전환지원금) 월 65만원, 6개월
- 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 진로상담과 직업체험 기회 제공하는 '장애 학생 취업지원' 확대(5천명 → 7천명)
- 직업적 장애판정 및 현장평가 등 직업능력평가, 고용의무이행지도, 장애인취업알선지원 <('21년) 8,791백만원 → ('22년) 8,192백만원>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06억원

-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한 II유형*(▲지원인원: 2,000 → 3,000명,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기간 확대: 3개월 → 6개월)지원 확대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서비스를 제공
 - * (II유형) 생계유지 등 시급한 취업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여 구직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 지원 컨설팅 제공
 - ** ('21년) 10,000명 18,594백만원 → ('22년) 11,000명 20,600백만원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28억원

- 발달장애인 등 취업의욕 고취에 동료 장애인의 지원이 효과적인 것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 ('21년) 운영비(800천원), 참여수당(3천원) → ('22년) 운영비(875천원), 참여수당 4.5천원 인상

○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전환지원: 37억원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지원
 - * (지원대상) 800명, (고용전환촉진수당) 월 30만원,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49,470	57,742	8,272	16.7
○ 장애인취업지원	26,166	30,630	4,464	17.1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16,985	20,600	3,615	21.3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취업지원	2,914	2,768	△146	△5.0
○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전환지원	3,405	3,744	339	10.0

③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 및 인식개선 지원 등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공공·민간훈련 지원 등을 통해 노동 시장 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연구·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706억원

- 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양성훈련 등 훈련과정 지원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가칭) 신축(총사업비 1,136억원)
 - * 건축비 40% 반영(15,022백만원)
- 직업준비 과정, 통학 지원(9개소)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훈련 센터 운영(19개소, 20,700백만원)
- 기업의 훈련수요에 대응한 맞춤훈련센터 운영(8 → 9개소, 10,999백만원)
 - * IT특화 맞춤훈련센터 신설(1개소) 증 454백만원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935명, 6,462백만원) 및 공공훈련(80명, 257백만원) 지원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78억원

- 장애인 기능경기(지방·전국, 발달) 개최 지원
- 국제대회 참가* 및 입상자에 따른 기능장려금 지급
 - * '22년 러시아(모스크바) 개최 예정

○ 장애인고용연구: 40억원

- 장애인고용연구(29과제), 장애인고용패널조사(583백만원),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465백만원), 발달장애인의 삶과 일자리 실태조사(300백만원) 등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주기 단축(연 1회 → 연 2회) 및 비대면 국제 포럼(1억) 개최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0억원

- 교육 강사 양성* 및 교육 의무 이행 지원**
 - * 전문강사 1,100명, 보수 500명
 - ** 무료 강사 지원 12,000개소, 비대면 교육 시스템 구축·운영(증 500백만원)
-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증 330백만원)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82,691	87,320	4,629	5.6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67,254	70,597	3,343	5.0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6,907	7,766	859	12.4
○ 장애인고용연구	4,385	3,982	△403	△9.2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4,145	4,975	830	20.0

④ 장애인고용정보화 지원 및 기금관리 운용 지원

○ 장애인고용정보화 지원: 45억원

- 장애인고용전산망 및 전산장비 등의 관리·운영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망분리 구축(980백만원)

○ 기금관리 운용 지원: 789억원

- 공단 인건비 및 장애인기금 사업운영비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78,391	83,381	4,990	6.4
○ 장애인고용정보화	3,358	4,526	1,168	△34.8
○ 기금관리(운영비)	75,033	78,855	3,822	5.1

5. 임금채권보장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2년도 순수입은 5,827억원('21년 보다 5.7% 증가)
- 여유자금 회수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9,646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총 계	1,008,284	964,628	△43,656	△4.3
☐ 순수입	551,308	582,724	31,416	5.7
○ 사업주부담금	381,864	389,427	7,563	2.0
○ 변제금·이자·공탁금 회수 등	169,362	193,297	23,935	14.1
○ 일반회계전입금	82	0	△82	△100.0
☐ 여유자금 회수	456,976	381,904	△75,072	△16.4

☐ 지 출

- '22년도 총지출은 7,008억원('21년 보다 4.1% 감소)
-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638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총 계	1,008,284	964,628	△43,656	△4.3
☐ 총지출	730,427	700,816	△29,611	△4.1
○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669,831	643,089	△26,742	△4.0
○ 무료법률구조지원	22,908	10,948	△11,960	△52.2
○ 대지급금(구, 체당금) 조력지원	135	94	△41	△30.4
○ 체불청산지원 융자	24,010	30,710	6,700	27.9
○ 임채기금 운영비	13,543	15,975	2,432	18.0
☐ 여유자금 운용	277,857	263,812	△14,045	△5.1

2) 주요 사업별 계획

- ❖ 체불근로자의 체불 임금·휴업수당·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대지급금 조력비용 지원
- ❖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체불청산 용자 지원,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 법 개정예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6,431억원

-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개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감소세 지속예상 반영

△ ('21년) 793억원(10,387명) → ('22년) 687억원(8,226명)

* 간이대지급금 신설 이후 5개년 평균 감소율(76.41%) 부여

-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증가 추이 및 제도개선* 소요 반영

△ ('21년) 4,813억원(103,651명) → ('22년) 5,744억원(120,623명)

* 지급대상 재직자 확대, 지급절차 간소화(7개월→2개월)

-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소요로, 미요구

△ ('21년) 1,092억원(21,000명) → ('22년) 0원(순감)

○ 무료법률 구조사업 소요비용 출연: 109억원

- 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21년) 85,058건 → ('22년) 38,875건 * 최근 3년간 평균소송건수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 임금체불관련 소송(민사, 소액심판, 보존, 강제집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일체

↳ 변호사 비용: 140,826원(건당) + 소송비용: 140,843원(건당) = 281,669원(단가 합계)

○ 대지급금 조력지원: 0.94억원

- 10명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1년) 도산(불)인정 134건, 대지급금신청 307명 →
('22년) 도산(불)인정 93건, 대지급금신청 219명

* 지원액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대지급금 신청 근로자 1인당 6만원

○ 체불청산 지원 용자: 307억원

-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용자 대상을 확대(근로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근로자 용자 '21.6.9 시행)

△ ('21년) 총 8,491명(사업주 4,488명, 근로자 4,003명) →
('22년) 총 14,153명(사업주 5,360명, 근로자 8,793명)

* 용자금액: 사업주(총 1억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근로자(1천만원)

↳ 이자율: 사업주(2.2 ~ 3.7%), 근로자(2.5%)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716,884	684,841	-32,043	-4.5
○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669,831	643,089	△ 26,742	△ 4.0
○ 무료법률구조 지원	22,908	10,948	△ 11,960	△ 52.2
○ 대지급금(구, 체당금) 조력지원	135	94	△ 41	△ 30.4
○ 체불청산지원 용자	24,010	30,710	6,700	27.9

6. 근로복지진흥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2년도 순수입은 3,346억원('21년 대비 14.4%)
 - 여유자금 회수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4,334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감 (B-A)	
				%
합 계	510,362	433,426	△ 76,936	△ 15.1
☐ 순수입	292,445	334,636	42,191	14.4
○ 용자금 회수	98,518	134,400	35,882	36.4
○ 재산수입	7,510	4,471	△ 3,039	40.5
○ 경상이전수입 및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71,857	17,230	△ 54,627	△ 76.0
○ 정부내부수입	114,560	178,535	63,975	△ 55.8
☐ 여유자금 회수	217,917	98,790	△ 119,127	△ 54.7

☐ 지 출

- '22년도 총지출은 2,806억원 ('21년 대비 22.7%)
 -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1,330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감 (B-A)	
				%
계	510,362	433,426	△ 76,936	△ 15.1
☐ 총지출	228,818	280,649	51,831	22.7
○ 사업비	189,131	258,528	69,397	36.7
○ 기금운영비	39,687	22,121	△ 17,566	△ 44.3
☐ 정부내부지출	60,623	19,751	△ 40,872	△ 67.4
○ 공자기금 예탁	50,000	-	△ 50,000	순감
○ 계정간 전출	10,623	18,777	8,154	76.8
○ 복권기금 반환	-	974	974	순증
☐ 여유자금운용 등	220,921	133,026	△ 87,895	△ 39.8
○ 여유자금 운용	220,921	133,026	△ 87,895	△ 39.8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근로자 복지사업

- ❖ 저소득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 필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하고 근로의욕 고취
- ❖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노후소득 보장 강화
- ❖ 중소기업의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 등을 통한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 완화

○ 생활안정자금(융자): 1,991억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 * ('21년) 15,652명 → ('22년) 15,796명
- (고용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 융자) 운수업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자금 융자
 - * ('22년) 신설, 50,000명

○ 근로자복지지원: 16억원

- 문화예술제(4억원): 4개 분야(미술·음악·연극·미술) 예술제 개최
- 기업복지활성화지원(12억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제공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상담 지원

○ 퇴직연금 사업운영: 92억원

- 계약형퇴직연금사업 운영(28억원):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운영(64억원): 중소영세사업장이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하고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

○ 근로복지기금 지원: 165억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협력업체 노동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중소기업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재정지원

○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38억원

- 근로복지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한 저소득 노동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지원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123,975	230,185	106,210	85.7
○ 생활안정자금(융자)	99,051	199,051	100,000	101.0
○ 근로자복지지원	1,646	1,646	-	-
○ 퇴직연금사업운영	2,754	9,188	6,434	233.6
○ 근로복지기금 지원	17,180	16,469	△711	4.1
○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3,344	3,831	487	14.6

② 신용보증 사업

- ❖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노동자 등이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대위변제: 283억원

- 고용노동부 실시 정책자금 융자 대상자 중 신용보증 신청하는 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이내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복지금(생활안정자금(융자)), 고보기금(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기금(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1계획(A)	'22계획(B)	증 감 (B-A)	
				%
계	19,156	28,343	9,187	48.0
○ 신용보증대위변제	19,156	28,343	9,187	48.0